

誓書: 10-13세기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책*

金 成 奎 (全北大)

- | | |
|------------------------|-------------------|
| I. 머리말 | III. 송대 동아시아에서 誓書 |
| II. 중국에서 서서의 기원과
유행 | 의 유행
IV. 결어 |

I. 머리말

12세기 초, 고려는 흥기하는 金의 기세에 놀려 칭신하게 되었다. 고려가 비교적 신속히 金의 종주권을 인정한 것은 급변하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냉정히 판단해 가능한 金과의 군사 충돌을 피하려 한 배려였다. 이때 한 가지 걸림돌이 된 것이 ‘誓書’ 문제였다. 金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짐할 맹서의 표문, 즉 誓表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고려가 당초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는 결국 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때 처음으로 서서가 대외 교섭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이후 麗-金 간에 특별한 위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서서 문제는 麗-金 관계사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사학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¹⁾

그런데 서서는 여-금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당시의 동아시아에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노계현, 『高麗領土史』(甲寅出版社, 1993); 박윤미, 「12세기 전반기의 국제정세와 고려-금 관계 정립」(『史學研究第』 104호, 2011) 등.

서 보편적인 외교 관행이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미 이 문제가 송조와 요, 서하 등과의 사이에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상호 전쟁 등을 거친 후에 和議를 추진할 때는 그 전제로 서서를 거의 예외 없이 교환하는 현상이 있었음을 지적한 적이 있다.²⁾ 하지만 그 후 필자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 정리와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高麗史 연구자 사이에서도 특히 금의 대외 문제에서 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³⁾ 당면한 문제 이상의 본격적인 追究는 없어 이 문제의 기원은 물론 고려 외교사의 중요한 장면에 대한 충분한 파악에 아쉬움을 남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서서를 둘러싼 사정을 정리해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송대 이전부터 있었던 중국의 전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많은 중국의 제도와 관행이 그런 것처럼 송대의 서서는 계통상으로는 특히 춘추시대에 광범위하게 이용된 ‘盟誓’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며, 이 전통은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에 영향을 주어 송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하지만 송대의 서서가 곧 ‘맹서’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이 양자의 관계와 특징에 주목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송대 서서에 대한 원점의 파악이라는 면에서, 춘추시대 맹서의 특징을 기존 연구의 도움을 통해 정리해보고, 또 그 이후 唐代까

2) 金成奎, 『宋代の西北問題と異民族政策』(汲古書院, 2000), pp.16-18

3) 주2) 논문 참조. 아울러 일본의 古松崇志도 「契丹·宋間の澶淵體制における國境」(『史林』90-1, 2007)에서 서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송·거란 간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전면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한다.

4) 윤영인, 「거란과 여진」(노기식 등 편, 『만주』, 소명출판, 2008) p.37은 Michael C. Rogers,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o” (Korean Studies Forum 4, 1978)을 인용해, “한족왕조를 천하의 중심으로 설정한 전통사상과 조공체제에서 ‘誓’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하 본문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명백한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윤영인은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송대 誓表와 誓詔 등의 ‘혼성적 외교양식(hybrid diplomatic genre)’은 당시의 다원적 국제 관계와 맹약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에 걸친 맹서 문제의 특징을 개관하여, 송 이후의 서서 문제를 비교적 검토할 것이다.

唐朝 붕괴 후 10-13세기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로사비(Morris Rossabi)가 표현한 것처럼 ‘대등한 국가들 사이의 중국(China among Equals)’의 상태가 연출되고 있었다.⁵⁾ 그리고 중심 세력이 사라진 상황 아래서 각국은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에 없던 다양한 외교 관행을 만들어갔다. ‘和議’ 또는 ‘和約’은 그 대표적인 산물이며, 특히 분쟁이 잦았던 각국이 주변국과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는 예는 드물 정도였고, 필자는 이 점에서 宋代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和議體制’라고 불렀다.⁶⁾ 이 화의에는 쌍방간에 安保를 보장할 수단으로 국경의 확정, 도망자의 인도, 인질의 제공 등 다양한 요소를 議題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본문의 검토 주제인 서서는 그러한 화의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안전보장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페어뱅크는 19세기 이후의 근대적 국제관계를 ‘조약시스템’(Treaty System)으로 파악하면서 여기에 포섭되지 않고 있던 종전의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조공시스템’으로 일반화한 적이 있다.⁷⁾ 이 ‘조약시스템’이야말로 필자가 강조하는 ‘和議體制’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宋代 동아시아 각국에서 교환된 여러 형태의 和約文을 거론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서서 쪽에 맞추어 그 내용과 의의를 생각하려 한다.

5)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傳統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역사문화연구』 32, 2009) 참조

6) 金成奎, 위의 책, pp.14-16. 古松은 최근 송-요의 관계를 ‘澶淵體制’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자가 제기한 ‘和議體制’라는 송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대표적인 일부로서 比定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전계 논문).

7) 김성규, 위의 논문.

II. 중국에서 서서의 기원과 유행

1. 先秦시대의 盟誓

인간이 여러 필요에 의해 타자와 약속을 맺는 행위는 극히 자연스러운 사회관계이며 태고부터 있던 현상이다. 중국 문헌에는 여기에 상당하는 것으로 ‘盟誓’라고 단어가 일찍부터 빈출한다. 송대의 서서는 이 같은 고대의 전통이 발전한 것이었다.

맹서에 관해서는 자료가 풍부하고 기존의 연구도 적지 않아 그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먼저 그것은 東周, 특히 춘추시대 제후국 사이에서 아주 흔히 사용되었다. 『춘추』와 『춘추좌씨전』에는 魯 隱公1년에서 哀公27년(전722-전468년) 사이에 제후국 간에 200회 가까운 맹서가 거행된 사실이 확인된다.⁸⁾ 또 ‘盟’자는 『춘추좌씨전』에 640회, 『춘추공양전』에 162회, 『춘추곡양전』에 172회나 나오며, 이에 비해 ‘誓’는 『춘추좌씨전』에 22회, 『춘추곡양전』에 1회, 그리고 『춘추공양전』에는 검출되지 않는다.⁹⁾

맹이 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서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⁰⁾ 즉 이것은 맹과 서가 원래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관계는 『文心雕龍』 祝盟 제10편에 보이는 다음의 설명에 분명하다.

盟이란 밝힌다는 뜻이다. 적색의 소와 백색의 말을 珠玉으로 장식한 祭器에 올려놓고 神明에 告하는 것이다. 옛날 하, 은, 주 3대의 제왕 때에는 盟이 없었고 때때로 誓가 필요할 때는 말로써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周가 쇠퇴하자 盟이 자주 행해졌다.¹¹⁾

8) 李力, 「東周盟書與春秋戰國法制的變化」(『法學研究』1995-4).

9) 吳承學, 「先秦盟誓及其文化意蘊」(『文學評論』2001-1).

10) 吳承學, 위의 논문.

11) 원문은 “盟者, 明也. 駢毛白馬, 珠盤玉敦, 陳辭乎方明之下, 祝告于神明者也. 在昔三王, 盟不及, 時有要誓, 結言而退. 周衰屢盟, ……”이다.

서가 말로 하는 간단한 약속 정도의 행위인 것에 비해 맹은 희생을 차려놓고 신에게 고하는 격식 있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禮記』曲禮下에 “約信을 찢라 하고 牲口로 임하는(莅) 것을 맹이라 한다”는 설명으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 맹은 위의 『文心雕龍』에 ‘詛盟’으로 되어 있고, ‘詛’는 “신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청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¹²⁾ 맹은 신에 대한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자에 대한 징벌을 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맹은 그 토대가 모든 인간에 공통하는 神에 대한 경외심과 그로부터 오는 심리적 압박 위에 놓여있으며, 그 신을 증인과 감독자로 삼아, 믿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이 장차 징벌할 것임을 공동으로 약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맹은 이처럼 정중한 격식을 갖추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그 본질은 약속, 즉 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춘추시대 문헌의 용례에 맹이 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 이유를 “맹에 사실상 서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한 앞의 설명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맹은 맹찢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³⁾ 또한 나아가 맹은 포괄적으로 보아 찢와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서를 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후 후대로 갈수록 맹과 서는 혼동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한편 앞의 『문심조룡』 인용문으로부터는 맹이 周가 쇠퇴하는 시점, 즉 대략 춘추시대 이후부터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춘추시대에 맹이 성행한 것은 이 시대가 바야흐로 난세에 진입한 시점임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짐작된다. 제후 간에 약육강식과 배신행위가 반복되는 속에서 단순히 말로써 하는 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 앞

12) 『尙書』無逸의 공영달 疏에 “以言告神, 謂之祝 請神加殃, 謂之詛”고 있다.

13) 胡康林, 「先秦时期盟誓档案概说」(『雲南档案檔案』, 2012)는 맹과 서의 관계에 대해 “先秦时期에는 구별이 분명치 않고 고로 사람들은 ‘盟誓’를 連用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盟誓’는 지금 필자가 지적한대로 기본적으로 는 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지, 맹과 서 간에 구별이 분명치 않아 혼용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에 이를 고평하는 맹이 한층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의 환공이 주 제한 葵丘會盟(전655년)을 비롯한 제후 간의 것에서부터 侯馬盟誓(전 497-전489년)처럼 제후국 내부에서 맺어진 것에 이르기까지 춘추시대에 빈번했던 회맹의 유행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周禮』秋官에는 맹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으로 ‘司盟’이 있음이 보인다.¹⁴⁾ 앞의 『문심조룡』에는 춘추 이전에 맹이 성행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周代의 ‘司盟’의 존재가 다소 어색하지만, 『주례』자체가 전국시대에서 漢代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것이 춘추시대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거나, 아니면 주대에도 실존한 맹과 관련된 설명으로 볼 수 있다.¹⁵⁾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걸친 맹서의 일반화에 따라 관련 의식의 절차도 정형화되었다. 그 주요 과정을 기존의 연구를 빌려 필자 방식대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¹⁶⁾

〈표1〉 先秦시대 盟誓 의식의 주요 절차

순서	대분류	소분류	관련 설명 등
I	사전 준비		소집 통지, 참가국과 인원의 지위에 따른 자리 배정
II	盟書(盟辭)의 확정		副本을 작성
III	희생의 준비와 取血	희생을 죽여 구덩이에 넣음	
		牛耳를 잡고 피를 받음 歃血	“卑者執之, 尊者涖之”
IV	盟書의 낭독과 처리	盟書 낭독	神明에게 보고

14) 『周禮』秋官6 司盟에 “司盟掌盟載之法. 凡邦国有疑会同, 则掌其盟约之載及其礼仪. 北面詔明神, 既盟则貳之.”라 있고, 鄭玄의 주에 “載, 盟辭也. 盟者, 书其辭于策, 杀牲取血, 坎其牲, 加书于上, 而埋之谓之載书,”라고 있다.

15) 董芬芬, 「春秋會盟文化與盟書的文体結構」(『西北師大學報』 45-2, 2008)은 서주시대의 회맹에 대해 언급한다.

16) 陈梦家, 「東周盟誓與出土載書」(『考古』 1966-5); 李模, 「先秦盟誓的种类及仪程」(『學習與探索』 2000-4, 총129기); 徐令杰, 「春秋會盟禮考」(『求是學刊』 2004-2).

		盟書 埋立	희생 위에 얹어 함께 묻음
V	사후 처리	拜盟	結盟에 대한 인사
		人質의 교환	背盟 방지를 위함
		盟書의 副本을 盟府에 보관	對照와 향후 대비

여기서 맹서의 의식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적은 I 과 V를 제외하면, 맹서의 내용 즉 그것을 확정 짓는 작업(II), 이어 희생에서 피를 받아 마시는 과정(III)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맹서는 신 앞에서 읽은 다음 희생과 함께 땅에 묻는다는 것도 확인된다. 이 의식이 끝난 뒤에는 인질의 교환도 있지만, 이는 전국시대에 들어 맹서를 한층 보증하기 위해 나타난 수단으로 맹서 제도의 타락이라 볼 수 있다.¹⁷⁾ 또한 희생과 관련해 “牛耳를 잡는” 자는 일반에 회맹의 대표자 격인 盟主로 알려져 있고, 이로부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속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牛耳를 잡는 것은 맹주보다 신분이 더 낮은 자의 역할이었다고 한다.¹⁸⁾

맹서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盟書(盟辭)의 작성이며,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각자의 이익에 직결되므로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수반한다. 맹서의 내용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형식은 그러한 맹서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틀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吳承學은『춘추좌씨전』등의 실례를 분석해, 先秦의 맹서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① 盟誓의 緣起 : 맹서를 하게 된 원인·배경
- ② 遵誓要求 : 맹서를 통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 사항·내용을 열거하는 것
- ③ 違盟惡果 : 만일 盟誓者 중에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장본인과 집안 사람들, 나아가 국가도 귀신의 嚴懲을 받을 것이

17) 李模, 앞의 논문.

18) 『春秋左氏傳』魯定公8년(전501)조에, “衛人請執牛耳.”에 대한 공열달의 正義에 “盟用牛耳, 卑者執之, 尊者澆之.”이라 있다. 李模, 앞의 논문 참조.

라는 것.

한편 董芬芬도 盟書의 文体를 검토한 뒤, “完整的 맹서에는 회맹의 기일, 참여 成員, 회맹의 緣起, 盟首, 詛辭 등 5개 부분이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였는데,¹⁹⁾ 이것은 오승학과 비교해 두 가지 요소(회맹의 기일과 참여 成員)가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세 가지(회맹의 緣起, 盟首, 詛辭)는 내용상 그의 ①, ②, ③과 일치한다.²⁰⁾ 동분분은 오승학의 ②에 盟首를, ③에는 詛辭라는 용어를 각각 부여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는 ‘盟首’와 ‘詛辭’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盟首는 “盟書의 首章”²¹⁾이라는 의미로 춘추의 맹서에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 즉 다짐의 말이 많이 보이며,²²⁾ 詛辭는 ‘詛’ 즉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背盟者에 대한 신의 저주 또는 징벌의 말을 적은 부분이다.

이들 맹서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다른 것들이 모두 가변적인 것에 비해 詛辭만큼은 그렇지 않고 대체로 고정된 문구가 사용되었다. 실례로서 『춘추좌씨전』 僖公28년(632년) 5월癸亥에 晉의 文公이 주관한 유명한 賤土會盟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王子虎가 诸侯와 王庭에서 맹서하였다. 그 要言으로서 “모두 주 왕실을 도와 제후들이 서로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 맹서와 다름이 있으면 신이 이를 죽이고 그 군사를 약하게 만들고 그 나라에는 상서로움이 없으며 그 자자손손에까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다.”²³⁾

주 왕이 王子虎(周的 大臣으로 惠王의 庶弟)를 보내 천토의 왕궁에서 제후들과 結盟한 뒤에 만들어진 맹서의 일부인 이 문장에서, 간단하지

19) 董芬芬, 「春秋會盟文化與盟書의 文体結構」(『西北師大學報』 45-2, 2008).

20) ①, ②, ③이 함께 등장하는 盟書의 사례로서는 예를 들어 주24)을 참조.

21) 『춘추좌씨전』 襄公23년 조의 杜豫注에 “盟首, 盟書之首章”고 보인다.

22) 董芬芬 앞의 논문.

23) 원문은 “王子虎盟诸侯于王庭. 要言曰, “皆獎王室, 無相害也. 有渝此盟, 明神殛之, 俾隊其師, 無克祚國, 及而玄孫, 無有老幼.”이다.

만 “皆獎王室，無相害也”는 ‘盟首’이고, 그에 이어지는 後文이 ‘詛辭’에 해당한다. 맹을 어길 경우 해당자는 물론 그 자손에까지 재앙이 미치고 그 나라의 군대와 국운이 쇠할 것이라고 한 이것은, 당시의 왕조로서는 최대의 저주라고 할 있다. 이 중 “有渝此盟，明神殛之”는 당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詛辭로 보이며, 그 밖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변형이 있었다.²⁴⁾

2. 秦 이후의 경우

秦에 의해 전국이 통일되고 봉건 제후가 소멸되면 그들 사이에 유행하던 맹서도 쇠락한다. 본절에서는 先秦시대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부나마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秦-唐시대의 史料에 산견하는 事例를 통해 先秦의 盟誓 전통이 宋代 직전까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일별해 두고자 한다.²⁵⁾

秦 이후의 맹서는 당연하지만 주로 분쟁이나 혼란 시기에 보인다. 『후한서』 권58 列傳48 臧洪에는 후한 말기 동탁의 폭거에 대해 臧洪 등 뜻 있는 刺史와 太守들이 한 왕실의 부흥을 위해 맹서를 하는 장면이 다음처럼 보인다.

(가) 壇場을 설치하고, 장차 盟을 하려하였다, …… 모두가 洪을 추대하니 洪이 攝衣해서 升壇한 후 操血하고 盟하여 말하기를, (나) “漢室이

24) 또 하나의 예로서 『춘추좌씨전』 희공28년 6월조에는 衛나라 사람들 간의 분쟁 끝에 맺은 맹약이 다음과 같이 있다. “晉人復衛侯，甯武子與衛人盟于宛濮曰，(A)天禍衛國，君臣不協，以及此憂也。今天誘其衷，使皆降心以相從也。不有居者，誰守社稷，不有行者，誰扞牧圉，不協之故，用昭乞盟于爾大神，以誘天衷。(B)自今日以往既盟之後，行者無保其力，居者無懼其罪。(C)有渝此盟，以相及也，明神先君，是糾是殛。”여기서는 (A)가 緣起, (B)가 盟首, (C)가 詛辭에 해당한다. 詛辭가 약간 바뀌어 “만일 이 맹서와 다름이 있으면 그에게 재앙이 미치고 신과 先君도 이를 규탄해 죽일 것이다”로 되어 있고, 또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神 이외에 宗上(先君)도 포함되어 있다.

25) 『古今圖書集成』 明倫彙編 交誼典 盟誓部에는 역대 맹서류가 모아져 있으나, 춘추시대의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不幸해, 皇綱을 잃었다. 兗州刺史岱, ……等이 義兵을 糾合해 國難에 달려간다. (다)대저 우리 同盟은 마음과 힘을 모아 臣節을 다하고 몸과 생명을 바쳐 반드시 두 마음이 없을 것이다. (라)만일 이 맹서와 다름이 있으면 그 자는 목숨을 잃고 후손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천지의 신령과 조상의 영혼이 이를 모두 굽어보신다.”²⁶⁾

맹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나)-(라)의 내용을 앞에서 이용한 춘추시대의 용어로 구별하면 (나)가 義兵 糾合의 배경을 적은 緣起, (다)가 일치단결을 다짐하는 盟首, 그리고 (라)는 맹서를 어길 경우에 대한 詛辭가 되며 이러한 구조는 춘추시대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특히 詛辭가 ‘有渝此盟’으로 시작하는 점과 그 속에 자손, 신, 祖宗 등의 어구를 동원한 것은 춘추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이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가)는 맹서 의식의 외형을 설명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壇場’을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 ‘操血’하여 盟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壇場은 제사 등을 위한 설비를 마련해 놓은 장소이며, 操血은 歃血을 뜻한다. 이로써 희생 자체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지만 삼혈이 맹서의 중요한 과정으로 여전히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춘추시대의 會盟場에 일반적으로 마련된 ‘坎’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무렵에는 회맹장의 중요 시설로 壇場이 출현하여, 아마도 이것이 ‘坎’의 기능 내지 상징성을 대신했다고 보인다. 별도로 坎이 있어서 이곳에 춘추시대처럼 희생과 맹서한 文을 묻었을 수도 있지만, 맹서를 위해 壇 위로 올라가는 등의 행위는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漢 말기의 맹서 관행이 춘추시대의 전통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변형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에 준하는 맹서의 의식과 盟書 형식은 이후에도 유지되어 갔다. 기술한 것처럼 남아 있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러한 유형으로 구별 가능한 삼국, 동진, 그리고 唐代의 예가 각기 발견된다.²⁷⁾ 관

26) 원문으로서는 “(가)設壇場, 將盟, ……咸共推洪. 洪乃攝衣升壇, 操血而盟曰, (나)“漢室不幸, 皇綱失. ……兗州刺史岱, ……等, 糾合義兵, 並赴國難. (다)凡我同盟, 齊心一力, 以致臣節, 隕首喪元, 必無二志. (라)有渝此盟, 俾墜其命, 無克遺育. 皇天后土, 祖宗明靈, 實皆鑒之.”이다.

런 기사를 모두 자세히 검토할 수는 없지만, 전제한 『후한서』 臧洪傳에 보이거나 추정되는 壇의 설치, 희생의 사용, ‘有渝此盟’으로 시작하는 詛辭의 닦은 점 등이 지속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이 당 후기(821년)에 이르러 토번과 맺은 유명한 ‘唐蕃會盟碑’(혹은 ‘長慶會盟碑’)의 碑文 속에서도 보이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안사 난 이후 국세의 저락 일로에 있던 당은 강직 토번에 계속 밀리다가 강화하게 되었다. 국호를 ‘大唐’과 ‘大蕃’이라 하고, 양국의 연호도 병기하는 등 완전히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이 조약문은 석비에 새겨져 양국의 수도인 장안과 라사 등 3곳에 건립되었으나 지금은 라사의 것만이 현존한다. 그런데 이 비문의 西面에는 조약문의 주요 내용으로 한문과 티베트어로 국경의 확정, 사절왕래 때의 영접 절차, 범죄자의 인도 등을 기록한 후,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이 쌍방이 공동으로 맹약한 것을 적었다.

이와 같이 盟約하여 각자 契陳하고 희생을 죽여 盟을 삼아 여기에 大約을 設한다. 만일 이 誓에 依하지 않는다면 蕃漢의 君臣은 어느 한쪽이

27) 삼국시대의 사례로 黃龍元年(229년) 6월에, 촉한이 孫權의 황제 즉위식에 衛尉 陳震을 보내 漢·吳 간에 對魏同盟을 협정하는 일과 관련해, “……. 造為盟曰,……. 且古建大事, 必先盟誓, 故周禮有司盟之官, 尚書有告誓之文, 漢之與吳, 雖信由中, 然分土裂境, 宜有盟約. …… . 故立壇殺牲, 昭告神明, 再歃加書, 副之天府. …… . 有渝此盟, 創禍先亂, 違貳不協, 愆慢天命, 明神上帝是討是督, 山川百神是糾是殛, 俾墜其師, 無克祚國. 于爾大神, 其明鑒之”(『三國志』吳書2 吳主 孫權傳2)고 있고, 東晉에서는 咸和 연간(326-334년)에 명장 郗鑒이 蕭峻의 난을 진압하기에 앞서 치른 맹서 의식에서 “設壇場, 刑白馬”, “有渝此盟, 明神殛之”(『晉書』열전제37 郗鑒)라는 장면이 보인다. 또한 당의 사례로는 德宗建中4년(783)에 韋皋가 변진 난의 하나로 일어난 涇原兵變(783-784)의 진압에 앞서, “乃築壇血牲與土盟曰, 協力一心, 以誅元惡, 有渝此盟, 神其殛之.”는 내용이 보이고(『新唐書』권158 열전83 韋皋), 다시 天寶十二載(753)년에는 韋陟이 안사난 진압과 관련해 행한 맹서 의식에서 “陟曰, 今中原未平, 江淮騷離, 若不齋盟質信, 以示四方, 知吾等協心戮力, 則無以成功. 乃推瑱為地主, 為載書, 登壇曰, 淮西節度使瑒, 江東節度使陟, 淮南節度使適, 衛國威命, 糾合三垂, 翦除兇惡, 好惡同之, 毋有異志. 有渝此盟, 隕命亡族, 罔克生育, 皇天后土, 祖宗明神, 實鑒斯言.”(『新唐書』권122 열전제47 韋安石 韋陟)고 보인다.

먼저 화를 당하고, 음모를 한 자는 破盟 이상의 罪科를 받을 것이다. 蕃漢의 君臣은 모두 稽告立誓해 두루 자세히 강화문을 만들고, 양국의 군주됨은 官印으로 증거를 삼고 登坛之臣이 성명을 亲署하며, 이 誓文은 玉府에 보관한다.²⁸⁾

특히 “회생을 죽여 盟을 삼아 大約을 設한다”는 내용과 ‘登坛’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볼 때 이때의 회맹이 춘추시대 이래의 전통과 상통하며, 한편으로 후한 말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난 중국의 ‘登坛’ 방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왕조로서의 당이 처음으로 ‘외국’으로서의 토번을 상대로 중국적 전통에 입각한 방식으로 회맹을 가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맹약은 그 동안 중국 내부에서만 경쟁자나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당대에 이르러 외국으로 그 상대의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한층 확대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외국과의 회맹은 당에서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예로 보이고, 외국이 주된 대상자로서 등장하는 것은 宋代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당이 토번과 함께 회맹이라는 형식을 빌려 화약을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던 배경에는 토번에서도 ‘맹서’의 관행이 오히려 중국 이상으로 중시되고 유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²⁹⁾

Ⅲ. 송대 동아시아에서 誓書의 유행

1. 송조를 중심으로 한 요 및 서하 간의 서서 교섭

28) “如此盟约, 各自契陈, 刑牲为盟, 设此大约. 倘不依此誓, 蕃汉君臣任何一方先为祸也, 仍须仇报, 及为阴谋者, 不在破盟之限, 蕃汉君臣并稽告立誓, 周细为文, 二君之验, 证以官印, 登坛之臣亲署姓名, 如斯誓文藏於玉府焉.” 이것은 王尧, 「唐蕃会盟碑疏释」(『历史研究』1980-4)에 실린 티베트어 원문의 한문 대역본임.

29) 토번에서의 회맹 문제는 예를 들어 禄金環·马正云, 「吐蕃盟誓制度研究综述」(『丝绸之路』2012-24) 참조.

‘당번회맹비’의 성립은 당 후기에 이르러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붕괴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 후 이 경향은 오대를 거쳐 통일 왕조가 다시 등장하는 宋朝에도 계속되었다. 송은 그 역사 내내 요(거란) 및 금(여진)과 경쟁해야 했고, 오히려 자신을 넘어서는 그들의 위압을 ‘和議’라는 수단을 동원해 가까스로 방어한 감이 있다. 화의는 ‘당번회맹비’처럼 비문은 아니지만 문서로 상대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점에서 그것과 성격이 같은 것이었다. 게다가 송은 요와 금은 물론 서하 등 주변 세력과도 이 관계를 유지하였고, 다시 이것이 이들 근린 왕조에 학습 효과를 주어 그러한 관계가 요와 서하, 금과 서하, 금과 고려 등 諸國 사이에 유행하였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대로 필자는 이를 국제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해 ‘화의체제’라 명명하였다.

화의가 조약인 이상 거기에는 국가 간의 약속이 따랐는데 그 약속의 형식에는 다른 아닌 춘추시대 이래의 맹서 전통이 엿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 점에 주의해 송대 동아시아에서 존재한 화약문(和議文)의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다만 그 수가 적지 않은 이 시기의 사례를 본문에서 모두 거론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어 여기서는 그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화약문에는 당사국 간에 존재한 외교 현안이 모두 집약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 또한 본문의 취지가 ‘맹서’의 검토에 있기 때문에 이와 직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할애하기로 한다.

송조가 타국과 맺은 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조약은 요와의 사이에 있던 ‘澶淵의盟’(1004)이었다. 이 맹약의 배경과 조약문에 대해서는 종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³⁰⁾ 본문과 같은 관점에서의 분석은 없었다. 『契丹國志』권20 澶淵誓書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宋眞宗誓書」(A)

30) 예를 들어 ‘전연의 맹’ 1000주년을 기념한 연구로 張希清 등, 『澶淵之盟新論』(上海人民出版社, 2007)이 있다.

(가)維景德元年, 歲次甲辰, 十二月庚辰朔, 七日丙戌, 大宋皇帝가 삼가 契丹皇帝闕下에 誓書를 致합니다.…….(나) 風土之宜에 따라 軍旅之費로써 每歲 絹二十萬匹, 銀一十萬兩을 帑고, ……: 誓書之外에는 각기 求하는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協同에 힘써 悠久히 지키가길 바랍니다. (다)이로부터 保安의 黎獻은 封陲를 謹守하여, 天地神祇에 맹세하고, 宗廟社稷에 고하고, 子孫이 共守해 이를 傳해 無窮하며, 만일 此盟을 어기면 享國할 수 없고, 昭昭天鑒하여 마땅히 이를 모두 과멸할 것입니다.……³¹⁾

「契丹聖宗誓書」(B)

(가)維統和二十二年, 歲次甲辰, 十二月庚辰朔, 十二日辛卯, 大契丹皇帝가 삼가 大宋皇帝闕下에 致書합니다. …….(나) 風土之宜에 따라 軍旅之費로써 每歲 絹二十萬匹, 銀一十萬兩을 帑고, ……: 誓書之外에는 각기 求하는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協同에 힘써 悠久히 지키 가길 바랍니다. 이로부터 保安의 黎獻은 封陲를 謹守하여, 天地神祇에 맹세하고, 宗廟社稷에 고하고, 子孫이 共守해 이를 傳해 無窮하며, 만일 此盟을 어기면 享國할 수 없고, 昭昭天鑒하여 마땅히 이를 모두 과멸할 것입니다. (다)某는 비록不才하나, 敢히 此約에 따라 삼가 天地에 고하고, 이를 子孫에게 맹서하여, 만일 此盟을 어기면 神明이 이를 무찌를 것입니다. 專具諂述, 不宣.³²⁾

조약문 (A)는 송이 요에게, (B)는 요가 송에 제출한 것이다. 이를 본

31) 全文은 다음과 같다. “維景德元年, 歲次甲辰, 十二月庚辰朔, 七日丙戌, 大宋皇帝謹致誓書於契丹皇帝闕下, 共遵誠信, 虔守歡盟, 以風土之宜, 助軍旅之費, 每歲以絹二十萬匹, 銀一十萬兩, 更不差使臣專往北朝, 只令三司差人搬送至雄州交割. 沿邊州軍, 各守疆界, 兩地人戶, 不得交侵. 或有盜賊逋逃, 彼此無令停匿. 至於壠畝稼穡, 南北勿縱搔擾. 所有兩地城池, 並可依舊存守, 淘濼完葺, 一切如常, 即不得創築城隍, 開掘河道. 誓書之外, 各無所求. 必務協同, 庶存悠久. 自此保安黎獻, 謹守封陲, 質于天地神祇, 告于宗廟社稷, 子孫共守, 傳之無窮, 有渝此盟, 不克享國. 昭昭天鑒, 當其殛之, 遠具披陳, 專俟報復, 不宣.”

32) 全文은 다음과 같다. “維統和二十二年, 歲次甲辰, 十二月庚辰朔, 十二日辛卯, 大契丹皇帝謹致書於大宋皇帝闕下, 共議戢兵, 復論通好, 兼承惠顧, 特示誓書, 以風土之宜, 助軍旅之費, 每歲以絹二十萬匹銀一十萬兩, 更不差使臣專往北朝, 只令三司差人搬送雄州交割. 沿邊州軍, 各守疆界, 兩地人戶, 不得交侵. 或有盜賊逋逃, 彼此無令停匿. 至於壠畝稼穡, 南北勿縱搔擾. 所有兩地城池, 並可依舊存守, 淘濼完葺, 一切如常, 即不得創築城隍, 開掘河道, 誓書之外, 各無所求, 必務協同, 庶存悠久. 自此保安黎獻, 謹守封陲, 質于天地神祇, 告于宗廟社稷, 子孫共守, 傳之無窮, 有渝此盟, 不克享國. 昭昭天鑒, 當其殛之. 某雖不才, 敢遵此約, 謹告於天地, 誓之子孫, 苟渝此盟, 神明是殛. 專具諂述, 不宣.”

문에서 검토한 춘추시대 이래의 맹서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큰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화의의 약속, 즉 화약 체결을 위해 당사국이 상대에게 이를 보증하는 誓書라는 것을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송·요 양국도 실무자가 사전의 협상을 거쳐 약정에 동의했겠지만, 그에 대한 보증서를 당사국이 하나의 協定文 속에 盟書와 誓約(盟誓)을 공동으로 기입한 춘추시대 이래의 방식과 달리, 각자가 별도로 작성해 상대방에 제출, 즉 교환한 것은 전혀 새로운 형식에 속한다. 또한 이 보증서를 ‘맹서’라 하지 않고 ‘誓書’라 칭한 점도 중요하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송 이후의 서약에서 ‘盟’이라는 내용이 사라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A)와 (B)에는 춘추시대 이래 당대까지 盟誓 의식에서 반드시 동반되던 희생 또는 ‘삼혈’에 관한 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한 의식이 양국 사이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간의 공식적 약속에서 미신적인 요소가 배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예에 해당하는 당대의 당번회맹비에서 발견되는 ‘刑牲为盟’했다는 점과는 대조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화약을 일반적으로 ‘전연의 맹’³³⁾이라 부르는 것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맹’과 ‘서’에 대한 혼동 내지 혼용이지, ‘맹’의 본래의 실체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구조면에서 볼 때 서서 (A)는 1004년(景德元年) 12월7일에 송의 眞宗이 요 聖宗에게 글을 보낸다는 (가)의 도입문, 그에 이어지는 요에 대한 송의 세폐 제공 등의 약정을 확인한 (나) 부분, 그리고 (다)는 그것에 대한 다짐을 적은 것으로 ‘有渝此盟’과 천지신명, 조상, 자손 등의 이름을 건 송 이전에 유행한 詛辭의 전통이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서서 (B)는 12월12일 자로 되어 있어 요가 송의 서서를 받고 난 5일 뒤에 제출된 것이다.³⁴⁾ 이 때문에 (B)는 (A)와 다소 다른 구조

33) 이러한 명칭의 용례로는 예를 들어 『宋史』 권313 열전72 富弼; 동서 권331 列傳90 沈遘전 등 참조.

34) 이 무렵의 사신 파견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문제로는 賈玉英, 「宋遼交聘制度 論略」(『中州學刊』 6, 2005)을 참조.

를 갖게 된다. 즉 (B)-(가)는 (A)-(가)와 같은 식으로 12월12일에 요 聖宗이 송 진종에게 회신한다는 도입문이지만, (B)-(나)는 구성상 (A)의 (나)와 (다)를 합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방식으로써 자신(요)도 화약의 내용과 송조의 다짐을 확인했다는 의미이다. 상호 협정한 화약의 내용은 한 자도 틀림없이 같아야 하지만, 요는 송 측의 서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교섭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런 후에 요도 서서의 말미((B)-(다))에서 별도의 詛辭를 첨부하고 있다.

힘의 拮抗 상태에서 빚어진 ‘澶淵의 盟’과 그 결과로 이어진 誓書의 作成과 交換은 송-서하 사이에서도 적용되었다.³⁵⁾ ‘전연의 맹’에서 불과 2년 뒤에 체결된 景德和約(경덕3년, 1006)은 그 중의 하나이다. 李繼遷(太祖) 이래로 계속되어 오던 서하의 독립운동, 즉 송에 대한 저항에 중지부름 찍은 이 화약에서도 ‘전연의 맹’에 준하는 약정과 형식이 있었음이 추정되지만,³⁶⁾ 그 내용을 확인할 충분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³⁷⁾ 또한 이때는 서하가 먼저 ‘誓表’를 제출하고 송조가 그 답으로 ‘誓詔’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대등관계를 반영시킨 송-요 간의 ‘誓書’와 달리, 두 나라의 관계가 ‘君臣之間’에 있음을 나타낸다.

35) 서하 건국의 주체인 黨項族 사이에 있던 고유한 盟誓 전통에 대해서는 尙世東, 「黨項盟誓制度探析」(『寧夏大學學報』 23, 총94기, 2001) 참조. 아울러 ‘전연의 맹’ 이후 송-요 외교사에서는 분쟁 등의 시점에서 ‘서서’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일(예컨대 慶曆 연간)이 발생하지만, 큰 틀에서의 서서는 유지되었다.

36) 김성규, 전게서 p.17 참조.

37) 『宋史』 권485 外國1 夏國上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부의 내용이 확인된다. “(大中祥符)九年, 因表邊臣違約招納逃亡, 云, 自景德中進誓表, 朝廷亦降詔書, 應兩地逃民, 緣邊雜戶不令停舍, 皆俾交還. 自茲謹守翰垣, 頗有倫理. 自向敏中歸闕, 張崇貴云亡, 後來邊臣, 罕守舊制, 各務邀功, 不虞生事, 遂致綏、延等界, 涇、原以來, 擅舉兵甲, 入臣境土; 其有叛亡部族, 劫掠主財, 去者百無十回. 臣之邊吏, 亦務蔽藏, 俱失奏論, 漸乖盟約. 詔答已令鄙延, 涇原, 環慶, 麟府等路約東邊部, 毋相攻劫, 其有隱蔽逃亡, 畫時勘送. 本國亦宜戒部下, 毋有藏匿, 各遵紀律, 以守封疆.” 『宋大詔令集』 권233 答趙德明誓表詔도 참조.

송-서하 간의 서서의 성격은 慶曆 연간(1041-48)에 발생한 군사 충돌과 그 전후처리로 맺어진 화약을 통해 비로소 볼 수 있다. 경덕화 약으로 송과의 대립을 피해 여유를 얻은 서하는 서방으로의 발전을 통해 국력을 확충한 후 그 아들 李元昊(景宗)에 이르러 정식으로 건국하여 송과 전쟁에 돌입했다가 결국 화해하고 ‘慶曆和約’을 맺었다. 여기서 교환된 서표와 서조에서 본문이 주의하는 부분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

「西夏誓表」(C)

그 詞에 말하길, (가)양국이 和好를 잃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立誓하여 지금부터 盟府에 보관하기를 바랍니다. (나)……. 중앙을 畫해서 界(국경)로 삼고, 界內에는 城堡의 축조를 허락한다. 朝廷은 해마다 絹13만匹, 銀5만兩, 茶2만斤을 사여한다, …….(다)지금 本國이 홀로 誓文을 바치니 곧바로 誓詔를 頒하기를 바랍니다, 世世 遵承하여 영원 히 和好로 삼겠습니다. 만일 君親之義가 없어지거나 臣子之心에 다른 생각이 생긴다면 宗祀가 길게 가지 못하고 자손이 재앙을 입을 것입니다, 고 했다.(『續資治通鑑長編』(이하『장편』)152 慶曆4년10월己丑朔)³⁸⁾

「宋誓詔」(D)

誓詔에 말하기를, …….(가)지금 納忠과 悔咎를 信誓에 나타 내, 이를 日月에 묻고, 이를 鬼神에 요구하며, 諸子孫에 이르기까지 渝變이 없겠다, 하니 申復이 懇至해 朕은 이를 甚嘉한다. (나)來誓를 俯閱해 하나같이 모두 約과 같이 한다. 마땅히 國人에 明諭하고, 祖廟에 藏書할 것이다, 고 했다.(같은 책, 동년동월庚寅)³⁹⁾

서하가 송에 전한 서표 (C)의 자세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景禧4년(1044) 10월1일보다는 이전이고,⁴⁰⁾ (D)는 그에 대해 송이 景禧4년

38) “其詞曰, (가)兩失和好, 遂歷七年, 立誓自今, 願藏盟府. (나)……. 乞畫中央為界, 於界內聽築城堡. 朝廷歲賜絹十三萬匹, 銀五萬兩, 茶二萬斤, …….(다)今本國自獨進誓文, 而輒乞俯頒誓詔, 蓋欲世世遵承, 永以為好. 倘君親之義不存, 或臣子之心渝變, 使宗祀不永, 子孫罹殃.”

39) “誓詔曰, …….(가)今乃納忠悔咎表於信誓, 質之日月, 要之鬼神, 及諸子孫, 無有渝變. 申復懇至, 朕甚嘉之. (나)俯閱來誓, 一皆如約. 所宜明諭國人, 藏書祖廟.”

40) (C)의 冒頭에 “初元昊以誓表來上, 其詞曰, ……”이라고 있다.

10월2일(庚寅)에 서하에게 준 서조이다. 상대에게 서약을 먼저 하는 입장에 선 서하는 앞서 검토한 (A)의 경우처럼 약정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C)-(나)), 이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서하건 송이건 ‘宗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자손에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詛辭(다)를 달았다. 또한 (C)에서는 “지금 本國이 홀로 誓文을 마치니 곧 바로 서조를 願하기를 바랍니다”고 한 부분이 (A)에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이것은 서서의 속성이 ‘상호 교환’이라는 점에 있다고 볼 때, 송조가 그것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라기보다, 송 측도 마땅히 제출해야 할 것을 재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송조는 서조(D)에서 서하의 ‘信誓’(C)를 검토한 후 이를 嘉納한다((D)-(가))고 한 다음, 서하가 열거한 내용((C)-(나))을 약속대로 준수하며 그 서약을 祖廟에 보관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D)-(나)). 하지만 여기서는 천지신명이나 자손의 이름을 걸고 약정의 이행을 다짐한 詛辭가 빠져 있는 것이 주의된다. 이 또한 다른 많은 예들이 詛辭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특별히 빠진 것이라기보다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전연의 맹’으로 宋은 遼와 安定된 관계를 維持한 反面, 西夏와는 戰爭과 和解를 반복하는 불안한 관계가 이어졌고 그 만큼 화약의 체결이 거듭되었다.⁴¹⁾ 그 화약문의 실태는 지금 검토한 ‘경력화약’의 서표(C)와 서조(D)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기타의 사례에서는 내용의 전모를 전하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속에서 熙寧연간(1068-1077)에 추진된 화약과 관련해 송조에서 있었던 한 가지 논의는 당시 중국인들의 서서에 대한 생각을 엿보게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래 ‘희령화약’은 서하의 추장 嵬名山이 자신이 관할지인 요충 綏州와 함께 송에 투항했다가 이것이 발단이 되어 양국 간의 대립을 거쳐 맺어진 것인데,⁴²⁾ 『장편』에는 이 때 서하가

41) 김성규, 전게서, pp.13-46, 「宋代國境問題の基本性格と國境の様相」.

송에 보낸 表에 대해 “단지 謝恩만 하고 誓를 하지 않았다(但謝恩而不設誓)”고 한 송 측 추밀원의 지적이 보이고, 그에 이어 神宗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한 王安石의 견해로서,

중국과 이적이 宗祀殄滅로써 誓를 삼는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지금 서하가 이렇게 나온다면 단지 答詔를 내리면 그것으로 좋을 것입니다.(권 237 희령5년8월壬午)

라고 보이며, 다시 그에 대한 신종의 반응으로,

誓表를 받는다고 어찌 저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겠는가?(동상)

고 보인다. 이것은 왕안석과 신종이 서서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 매우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이들은 화약이 거둬지는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아무리 ‘宗祀殄滅’이라는 詛辭를 동원해 다짐을 받는다 해도 현실적인 역지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왕안석의 말에서는 송조에서 ‘이적’ 즉 외국과 화약을 맺을 때는 ‘誓’를 교환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이 간취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화약문에서 서서를 제외시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반하는 과격적인 일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서 文彦博 같은 중신은 “맹서는 예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천지신명에 빈다 해도 변할까 걱정이 되는데 서표가 없다면 어떻게 (신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⁴³⁾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다시 “盟誓가 있다면 그들이 맹서를 어길 때 우리에게 명분이 생깁니다.”⁴⁴⁾고 하여, 盟誓(즉 誓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왕안석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맹서가 신뢰할만한 것이라면 서하가 앞에서 제출한 誓로足합니다, 巨은 誓와 不誓 모두

42) 김성규, 전계서, pp.97-126, 「綏州事件と王安石の對西夏國境策定策」.

43) 앞의『장편』과 동소.

44) 앞 注)와 같음.

가 보증할 수 없음을 걱정합니다.”고 하였다. 서하가 ‘경력화의’에서誓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誓는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그의 입장은 “힘으로 서하를 제압할 수 있다면 어찌 명분이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한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⁴⁵⁾ 서서를 놓고 오간 문언박과 왕안석 두 사람의 짧은 대화이지만, 진통을 이어가려는 보수파와 효용이 없다면 그것을 개혁하려는 진보파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이후 자세한 경위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같은 달(8월)에 서하와 송은 서표와 서조를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⁶⁾ 송은 신종과 왕안석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교의 관행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사실 왕안석처럼誓約의 효용을 믿지 않는 태도는 일찍부터 중국인들 사이에 존재하여, 본문에서 이미 소개한 『문심조룡』(祝盟 제10편)의 인용문에 이어서는,

하지만 (어떠한 盟誓라 해도) 道義가 있으면 끝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道義가 없으면 본래의 맹서는 改變될 것이니, 왕조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어찌 詛呪하는 말 속에 있겠는가?⁴⁷⁾

라고 보인다. 맹서가 유행한 춘추시대에 이미 背盟이 비일비재한 사실을 반영한 인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45) 이상은 본문에서 인용한 『長編』의 同所를 참조.

46) 『長編』 권237 희령5년8월 己丑에 “詔陝西諸路經略使, 夏國已差人進誓表, 可相度減將卒等及州軍城寨屯泊東兵.”이라 있고, 이에 대해 李燾는 注에 “初六日進表不依式, 王安石云云. 可考.”라고 해 그 역시 서하가 결국 서표를 제출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同書 희령5년8월 辛卯에는 “詔, 陝西, 河東諸路經略司, 夏國進誓表, 朝廷已降詔依慶元五年正月壬午誓詔施行, 自令約束當職官吏等各守疆場, 無令侵掠, 及不得收接逃來人口.”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송조가 이전의 예에 의거했다는 “慶元五年正月壬午”는 명백한 오류이다. 이것은 내용의 상호 관계상 ‘慶曆和議’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韓蔭晟 編, 『黨項與西夏資料匯編』 中卷 제4冊(寧夏人民出版社), pp.3796-3797에도 이를 慶曆4년10월庚寅으로 비정한다.

47) “然義存則克終, 道廢則渝始, 崇替在人, 咒何預焉.”

이상과 같이 북송 왕조를 중심으로 분쟁 관계에 있는 요나 서하 등과의 사이에 서서를 교환하는 외교가 일반화되면⁴⁸⁾ 이것이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어 이러한 방식의 외연이 한층 확장된다. 요가 11세기 중반 서하와 전쟁을 겪은 뒤 서표를 확보한 것은 그 예이다.⁴⁹⁾ 다만 이때 요는 서하에게 서표를 받기만 하고 서조를 주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⁵⁰⁾ 이것을 유일한 예외로 들리면 서하를 포함해 고려 등 다른 상대와 서서를 교환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2. 금조를 중심으로 한 송 및 서하 간의 서서 교섭

북송시대에 일반화된 국가 간 교섭에서의 서서 교환 방식은 여진의 金朝에 의해 가장 충실히 계승되고 또 한층 폭넓게 이용되었다. 12세기 초 건국과 거의 동시에 요와 북송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서하와 고려마저 압박해 종주권을 확보한 금은 향후 12세기 중에는 자신의 패권을 동아시아에서 유지하였다. 이 때 금이 주변의 남송, 서하, 고려 등 3국 모두에게 서표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서표에 보인 장

48) 송조는 南蠻과도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고, 그들로부터도 誓表를 받은 예가 보인다. 『宋史』 493 列傳252 蠻夷1 西南溪峒諸蠻上에 “自是, 仕義歲奉職貢. 然黠驚, 數盜邊, 即辰州界白馬崖下啞溪聚眾據守, 朝廷數招諭, 令歸侵地, 不聽. 熙寧三年, 爲其子師綵所弑. 師綵專爲暴虐, 其兄師晏攻殺之, 并誅其黨, 納誓表于朝, 并上仕義平生鞍馬, 器服, 仍歸啞溪地, 乃命師晏襲州事.”가 그것이다.

49) 『遼史』 권20 본기20 興宗 重熙23년(1054) 10월丙辰조에 “李諒祚(즉 서하의 毅宗(필자))遣使進誓表.”라고 있다.

50) 필자는 이를 기록의 생략이라기보다 요가 본래부터 서조를 서하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싶다. 앞서 본 ‘경력화약’에서의 서하의 송에 대한 칭신과 臣屬은 사실상 송의 체면을 지키고 그 대가로 歲賜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 이에 비해 요-서하의 관계는 비록 충돌도 있었지만 서하의 요에 대한 臣屬의 도가 훨씬 강했고, 이것이 요로 하여금 ‘신하’ 취급하는 서하에 誓書를 생략시키는 입장에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서하의 요에 대한 관계와 송을 포함한 3자의 관계는 김성규, 「3개의 ‘트라이앵글’: 북송 시대 국제관계의 대세와 그 특징에 관한 시론」(『역사학보』 205, 2010)참조.

한 집착은 같은 북방민족인 요보다 한층 강했다. 금은 이 서서를 통해 자신의 패권을 보증 받으려 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12세기, 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질서 속에서 금, 송, 서하 등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서서 교환의 정황과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다만 고려에서 발생한 서서 문제는 別稿를 통해 상론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서의 더 이상의 고찰은 할애한다. 특히 1120년대 말에 불거진 고려의 금과의 문제는 그 직전에 막 마무리된 금과 남송, 그리고 금과 서하 간의 서서 문제에 영향을 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토는 後考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금이 가장 먼저 서서를 접수한 상대는 송이었다. 금이 송과 체결한 화약으로는 후술하는 남송 紹興12년(1142년)의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최초로 생각되기 쉽지만, 그에 앞선 북송 멸망의 前夜에도 협약이 있었다. 요에 대한 협공과 요 멸망 후의 송-금의 관계를 약속한 소위 ‘海上의 盟’이 그것이다. 그런데 ‘해상의 맹’ 자체는 1120년에 일단 체결되었지만, 이 직후 두 나라의 복잡한 관계로 우여곡절을 거친 3년 뒤에 맹약이 다시 수정·체결되었고, 이때 양국 황제의 명의로 교환된 ‘서서’가 그 형식을 알 수 있게끔 사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맹약문은 『大金弔伐錄』제23-제25篇에 의하면 송 휘종 宣和5년=금 태조 天輔7년(1123년) 3월4일에 송이 금에 먼저 제출하였고, 반대로 금이 송에 제출한 것은 동년 4월8일로 되어 있는데, 다음은 그들의 중요 부분이다.

「南宋誓書」(E)

(가)宣和5년3월4일, 大宋皇帝가 大金大聖皇帝闕下에게 誓書を 드립니다. …….

(나)大金大聖皇帝가 創興해 遼國을 병합하고 宋이 遣使하여 五代 이래로 契丹에 陷入된 燕地를 計議하니, 다행히 好意로 燕京, 涿, 易, 檀, 順, 景, 薊 및 그 屬縣 그리고 所管民戶를 주었습니다. 요의 영역은 거의가 금의 소유입니다. 이전부터 거란에 주던 銀 20만량, 絹 30만필, 그리고 燕京에서 매년 나오는 稅利, - 五六分 中의 一分 - 計錢 100만貫文에 이르는 物色은 매년 南京의 界首에 搬送하여 交割하고, 그 종류와 수량에 대

해서는 사전에 여러 번 왕복하면서 정한 國書에 밝혀져 있습니다. 매년 합쳐 綠縶 200拷棰(그릇)을 교부합니다. …….(다)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懽好하는 것이며 萬世 동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긴다면 天地가 鑒察하고, 神明이 신속히 재앙을 입힐 것이며, 子孫이 이어가지 못하고, 社稷이 傾危할 것입니다. …….(『大金弔伐錄』 第23篇)⁵¹⁾

「回賜誓書」(F)

(가)天輔7년4월8일, 大金皇帝가 大宋皇帝闕下에게 書를 드립니다. …….

(나)이전에 契丹國主가 失道하여 백성이 塗炭에 빠지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니, 죄를 토벌하고 그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貴國이 遣使해 航海計議하니, 만일 장래에 遼國을 併合하면, 幽燕 등의 故地를 반환할 것을 희망합니다. …… 처음으로 敦好를 바라는 뜻에서 특별히 燕京, 涿, 易, 檀, 順, 景, 薊 및 그 屬縣 그리고 所管民戶를 약속과 같이 供與합니다. 지금은 글을 받아보니, “요의 영역은 거의가 금의 소유입니다. 이전부터 거란에 주던 銀 20만량, 絹 30만필, …… 만일 이 약속을 어긴다면 天地가 鑒察하고, 神明이 신속히 재앙을 입힐 것이며, 子孫이 이어가지 못하고, 社稷이 傾危할 것입니다.”(다)本朝의 뜻은 萬邦과 協和해 誠信을 크게 나타내는 데에 있으며, 故로 燕地를 반환하는 것을 誓約과 같이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天地가 鑒察하고, 神明이 신속히 재앙을 입힐 것이며, 子孫이 이어가지 못하고, 社稷이 傾危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 쪽이 이를 어긴다면 일체 誓約에 준하여 함께 정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專具披述, 不宣. 謹白. (『大金弔伐錄』 제25편)⁵²⁾

51) “維宣和五年歲次, 三月甲寅朔, 四日丁巳, 大宋皇帝致誓書於大金大聖皇帝闕下. 天之所助者順, 人之所助者信, 履信思乎順, 則自天祐之, 吉無不利. 昨以大金大聖皇帝創興, 并有遼國, 遣使計議五代以後陷入契丹燕地, 幸感好意, 特與燕京, 涿, 易, 檀, 順, 景, 薊并屬縣, 及所管民戶. 緣爲遼國尙爲大金所有, 以自來交與契丹銀二十萬兩, 絹三十萬疋, 并燕京每年所出稅利 - 五六分中只算一分 - 計錢一百萬貫文合值物色, 常年搬送南京界首交割. 色數已載前後往復議定國書. 每年并交綠縶二千拷棰. 兩界側近人戶不得交侵, 盜賊逃入彼此無令停止, 亦不得密切間諜, 誘擾邊人. 若盜賊并賊捉敗, 各依本朝法令科罪訖, 賊罰. 雖盜賊不獲, 蹤跡到處, 便勒留償. 若有暴盜或因別故, 合舉兵衆, 須得關報沿邊官司. 兩國疆界各令防守. 兩朝界內地各如舊, 不得遮堵道路. 至如將來殊方異域使人往還, 無得禁. 所貴久通懽好, 庶保萬世. 苟違此約, 天地鑒察, 神明速殃, 子孫不紹, 社稷傾危. 專具披述(陳述), 不宣. 謹白.”

52) “維宣天輔七年, 歲次癸卯, 四月甲申朔, 八日辛卯, 大金皇帝致書於大宋皇帝闕下. 惟信與義, 取天下之大器也. 以通神明之心, 以除天地之害. 昨以契丹國主失道, 民墜塗炭, 肆用興師, 事在誅弔. 貴國遣使航海計議, 若將來併有遼國, 願還幽燕故

(E)와 (F)는 형식과 내용에서 약 120년 전에 송-요 사이에 주고받은 것(즉 (A)와 (B))과 닮아 있다. 물론 ‘전연의 맹’과 ‘해상의 맹’을 비교하면 그 경위는 다르지만 송은 협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와 금에게 모두 저자세였고 이 점이 상대에게 두 차례 모두 서서를 먼저 제출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고 보인다.⁵³⁾ 그리고 이에 대해 요가 (B)의 방식으로, 또 금은 (F)의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서서를 각각 제출함으로써 결국 송의 (A)와 (E)를 비준하는 듯한 자세와 효과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송이 요와 금에게 각기 ‘交與’하게 된 歲幣의 존재도 같은 작용을 했을 것이다.

(E)와 (F)의 형식을 보면 도입문에 해당하는 (가)는 국호와 군주호로 ‘大宋皇帝’와 ‘大金皇帝’를 사용해 대등함을 나타냈고, 또 각기 상대에게 보내는 글을 ‘致書’라고 표현하여 역시 균형을 지켰다. 여기서는 (E)-(a)의 ‘致誓書’가 (F)-(a)에서 ‘致書’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해야겠지만, 이것이 당시의 사정 등에서 볼 때 金の 優位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지는 (E)의 (나)는 앞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정형화된 것처럼 약정에 이르는 경위를 간단히 적은 다음 두 나라가 지켜야 할 내용을

地，當時曾有依允。迺者親領兵馬，已至全燕，一方城池，不功自下。尚念始欲敦好，特以燕京，涿，易，檀，順，景，薊并屬縣，及所管民戶，與之如約。今承來書，緣爲遼國尙爲大金所有，以自來交與契丹銀二十萬兩，絹三十萬疋，并燕京每年所出稅利 - 五六分中只算一分 - 計錢一百萬貫文合值物色，常年搬送南京界首交割。色數已載前後往復議定國書。每年并交綠罽二千拷栳。兩界側近人戶不得交侵，盜賊逃入彼此無令停止，亦不得密切間諜，誘擾邊人。若盜賊并贓捉敗，各依本朝法令科罪訖，贓罰。雖盜賊不獲，蹤跡到處，便勒留償。若有暴盜或因別故，合舉兵衆，須得關報沿邊官司。兩國疆界各令防守。兩朝界內地各如舊，不得遮堵道路。至如將來殊方異域使人往還，無得禁攔。所貴久通權好，庶保萬世。苟違此約，天地鑿察，神明速殃，子孫不紹，社稷傾危。本朝志欲協和萬邦，大示誠信，故與燕地，兼同誓約。苟或違之，天地鑿察，神明速殃，子孫不紹，社稷傾危。如變渝在彼，一准誓約，不以所與爲定。專具披述，不宣。謹白。”

53) ‘전연의 맹’에서 송과 요 중 어느 쪽이 먼저 맹약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사료가 없어 논란이 있지만 필자는 송조 측으로 생각한다. 관련 연구로는 전계 賈玉英 논문 참조.

일일이 확인한 부분이다. 본문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를 위해 양국이 “사전에 여러 번 왕복하면서” 협상을 거쳤음을 물론이다. 이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동맹군이 요를 멸망시킨 후에 금이 송에게 “燕京, 涿, 易, 檀, 順, 景, 薊 및 그 屬縣 그리고 所管民戶를” 供與하고, 그에 대해 송은 금에게 과거 요에게 주었던 歲幣로서 은 20만량, 絹 30만필 그리고 燕京에서 매년 거둬들이는 稅收 100만貫文 상당의 재화를 제공하는 점이다. 송의 입장에서는 금의 힘을 빌려 국초 이래의 염원인 ‘연운16주’의 중심을 회복한다면 종래 요에게 주던 세폐는 물론 100만관을 추가로 금에 제공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이때 금에게 주는 세폐의 양이 ‘전연의 맹’ 때의 그것(서서(A)와 서서(B))보다 많아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발생한 소위 ‘慶曆增幣’(또는 ‘重熙增幣’, 1042년)이라는 사건에 의해 요에 제공하는 세폐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⁵⁴⁾

(E)는 끝으로 (다)에서 관례에 따라 약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천지와 신명에게서 재앙을 받고, 자손과 사직이 파탄된다는 詛辭를 달았다.

한편 (F)의 (나)는 이미 검토한「契丹聖宗誓書」(B)와 같은 방식으로, (E)-(b)의 주요 내용에 (E)-(c)를 그대로 합친 것을 토대로 그 위에 송이 피력한 약정을 인지하고 자신도 그것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부분이다. 그런 후에 (F)는 (다)에서 별도로 자신의 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 그것은 “天地鑒察, 神明速殃, 子孫不紹, 社稷傾危”라는 것으로 (E)-(다)와 완전히 일치한다. 詛辭의 문체 역시 형식화되고 또 고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어떠한 詛辭를 동원한 盟書라 해

54) 즉 慶曆 연간(1041-48)에 오는 송이 서하와 교전하는 틈을 타 송을 압박해 銀과 絹을 10만씩 추가로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 역시 ‘전연의 맹’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송이 ‘稅收의 錢額 100만貫文’을 금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송이 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추가로 규정된 부분이었다.

도 의미가 없고, ‘해상의 맹’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송-금 관계 파탄의 중요한 요인이 송의 배신행위에 있다고 볼 때, 송이 결국 금에 순식간에 150년의 사직을 잃고 또 황위를 이어오던 태종 계통의 후손이 모두 絶滅한 것은 공교롭게도 그 결과가 (E)에서 송이 내세운 맹서의 詛辭처럼 되어버려 매우 흥미롭다.

이로써 송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중국 중남부를 중심으로 남송이 재건되었다(1127년). 하지만 송-금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양국은 향후 15년간에 걸친 군사 대립 끝에 겨우 화해하였다(1142년). ‘紹興(또는 皇統)和議’라고 불리는 이 조약 역시 양국이 사전 협상을 거친 다음 서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식 체결되었다.⁵⁵⁾ 이 화의가 高宗과 秦檜에 의해 악비 등 반대파를 누르고 강행됨으로써 송의 금에 대한 지위를 낮추게 만든 사건이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국치’의 사건이 『송사』 등 송 측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만, 『금사』에는 宋이 金에 보낸 서표가 다음처럼 전한다(본문에서는 이를 「紹興誓表」라 칭한다). 이에 반해 『금사』에도 금이 송에게 준 서조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紹興誓表」(G)

宋主가 端明殿學士 何鑄等을 보내 誓表를 바쳤다. 그 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 臣 構는 말씀드립니다. (나)지금, 국경은 淮水의 中流로 界를 삼고, 西 측의 唐, 鄧州는 上國에 속하며, 鄧州로부터 西쪽 40리 및 남쪽 40리를 界로 삼아 鄧州에 속하게 합니다. 그 40리 밖 및 西南은 모두 光化軍에 속해 弊邑의 沿邊州城이 됩니다. 이미 恩造를 입어 藩方이 되었으니 世世子孫이 臣節을 謹守하겠습니다. 매년 皇帝의 生辰 및 正旦에 遣使해 稱賀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歲貢하는 銀, 絹 25萬兩匹은 壬戌年부터 시작해 봄에 사람을 보내 運반시켜 泗州에서 交納하겠습니다.

55) 『宋史』 권29 本紀29 高宗6 紹興11년11월조에는 “壬子, 蕭毅等入見, 始定議和盟誓. 乙卯, 以何鑄簽書樞密院事, 充金國報謝進誓表使. 庚申, 命宰執及議誓撰文官告祭天地, 宗廟, 社稷. …… 是月, 與金國和議成. 立盟書, ……”라는 과정이 보이며, 그 하나로서 송조는 誓表를 天地, 宗廟, 社稷에 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규, 「金朝의 ‘禮制霸權主義’에 대하여」(『中國史研究』 86, 2013) 참조.

(다)만일 이 맹서와 다름이 있으면 신이 이를 죽여 목숨을 잃고 일족이 망하며 그 국가 또한 멸망할 것입니다. 臣이 이제 誓表를 올리니 바라옵건대 上國도 서둘러 誓詔를 내려 주시면 弊邑은 영원히 이에 의지할 것입니다.(『금사』권77 열전15 宗弼)⁵⁶⁾

신하국으로 전락한 송의 저자세는 文中 곳곳에 보이는 ‘臣 構(고종의 實名)’, ‘上國’, ‘弊邑’, ‘恩造’, ‘藩方’, ‘歲貢’ 등의 용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 먼저 2월에 보낸 서서를 서표라 했고, 이에 대해 금은 동년 3월에 ‘宋帝’에 대한 책봉을 거친 두 달 뒤에 서조를 비로소 전달하였다.⁵⁷⁾

「紹興誓表」(G)는 정식의 서표 全文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조는 (가)와 같은 도입문을 상투적으로 적은 다음, (나)에서 역시 議定된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경의 확정, 신하국 송의 의무로서 金帝의 생신 및 正旦에 遣使 · 칭하할 것, 그리고 해마다 銀, 絹 25萬兩匹의 ‘공납’ 등을 밝히고,⁵⁸⁾ 마지막 (다)에서 춘추시대 무렵부터 보이는 판에 박힌 문구로서의 詛辭를 삽입하는, 통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에서 “上國도 서둘러 서조를 내려 주시면 弊邑은 영원히 이에 의지할 것입니다”고 한 것은 앞의「西夏誓表」(C)에서 “지금 本國

56) 宋主遣端明殿學士何鑄等進誓表, 其表曰, 臣構言, 今來畫疆, 合以淮水中流爲界, 西有唐, 鄧州割屬上國. 自鄧州西四十里并南四十里爲界, 屬鄧州. 其四十里外並西南盡屬光化軍, 爲弊邑沿邊州城. 既蒙恩造, 許備藩方, 世世子孫, 謹守臣節. 每年皇帝生辰并正旦, 遣使稱賀不絕. 歲貢銀, 絹二十五萬兩匹, 自壬戌年爲首, 每春季差人般送至泗州交納. 有渝此盟, 明神是殛, 墜命亡氏, 踏其國家. 臣今既進誓表, 伏望上國蚤降誓詔, 庶使弊邑永有憑焉. (『금사』 권77 列傳第15 宗弼)

57) 『金史』 60 表第2 交聘表上 皇統2년(1142)조에 “二月辛卯, 宋端明殿學士何鑄, 容州觀察使曹勛來進誓表, 三月丙辰, 遣光祿大夫左宣徽使劉筈冊宋康王爲宋帝, 以故天水郡王等三喪及宋帝母韋氏歸于宋. 五月乙卯, 遣使賜宋誓詔.”라는 과정이 보인다.

58) 본문에서 제시한 「紹興誓表」(G)는 화약의 약정문 중 주요 내용만을 담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사료에 보이는데, 『金史』 권79 列傳17 宇文虛中에 「皇統二年, 宋人請和, 其誓表曰, 自來流移在南之人, 經官陳說, 願自歸者, 更不禁止. 上國之於弊邑, 亦乞並用此約.”고 있는 것은 그 예이다.

이 홀로 誓文을 바치니 곧바로 서조를 頒하기를 바랍니다, 世世 遵承하여 영원히 和好로 삼겠습니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남송이 과거에 서하가 처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입장과 심정이 되어버린 것을 보여 준다. 이후 송과 금은 전쟁을 반복하면서 화의를 갱신해 乾道和議(1165년)와 嘉定和議(1208년)를 맺어가지만 그 형식과 기본 내용은 이상에 준하는 것이었다.⁵⁹⁾

한편 금은 송과 서서 교환을 마친 바로 다음 해(1124년(天會2))에 연이어 서하와도 그것을 교환하게 되었다. 파죽지세로 동북아 전역에 패권을 확장해 간 금은 요를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은 다음, 오래 동안 요의 영향 하에 있던 서하에 대한 종주권을 탈취하였다. 『금사』(권 134 열전72 外國上 西夏)에는 그러한 관계를 인정한 서하의 서표가 동년 3월자로, 그리고 금의 서하에 대한 서조는 윤3월자에 제출된 것이 함께 자세히 보인다.

「西夏誓表」(H)

서표에서 다음처럼 말했다. (가)臣 乾順은 말씀드립니다, …… . 臣은 遼國에 대대로 혼인 관계를 맺어 그 藩臣이었습니다, …… .(하지만 금조의)德音을 입어 前罪를 너그럽게 용서받았습니다. …… . (나)이제부터 歲時의 朝賀, 貢進하는 表章, 使人의 往復等事는 모두 영원히 遼國을 臣事하던 舊例에 따르겠습니다. …… . (다)이상에서 서술한 일들에 대해 臣은 이와 같이 굳게 서약해 후손도 변함이 없으며, 만일 다름이 있으면 天地가 鑒察하고 神明이 이를 죽이며 禍가 자손에 미치고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⁶⁰⁾

59) 이들 화약의 전문을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함은 확인되지 않는다.

60) “誓表曰, 臣乾順言, 今月十五日, 西南. 西北兩路都統遣左諫議大夫王介儒等齎牒奉宣, 若夏國追悔前非, 捕送遼主, 立盟上表, 仍依遼國舊制及賜誓詔, 將來或有不虞, 交相救援者. 臣與遼國世通姻契, 名係藩臣, 輒爲援以啟端, 曾犯威而結讐. 既速違天之咎, 果罹敗績之憂. 蒙降德音以寬前罪, 仍賜土地用廣藩籬, 載惟舍垢之恩, 常切戴天之望. 自今已後, 凡於歲時朝賀, 貢進表章, 使人往復等事, 一切永依臣事遼國舊例. 其契丹昏主今不在臣境, 至如奔竄到此, 不復存泊, 即當執獻. 若大朝知其所在, 以兵追捕, 無敢爲地及依前援助. 其或徵兵, 即當依應. 至如殊方異域朝覲天闕, 合經當國道路, 亦不阻節. 以上所敘數事, 臣誓固此誠, 傳嗣不變, 苟或有渝, 天地鑒察, 神明殛之, 禍及子孫, 不克享國.”

「金誓詔」(I)

誓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 天會2년 윤3월戊寅朔에 皇帝가 夏國王 乾順에게 誓詔를 賜한다. (나)……. 卿은 깊이 前非를 깨닫고 樂從內附하니 …… 割賜하는 地土, 使聘의 禮節, 서로 援助를 하는 등의 일은 모두 삼가 先朝의 制詔에 따를 것이다. ……(다) 朕이 어찌 食言하겠는가, 만일 變渝가 있으면 卿의 誓와 같을 것이다. 대대로 戒諭하여 그 진실함이 바뀌지 않게 하라.⁶¹⁾

(H)와 (I)는 이미 앞서 검토한 여러 서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기존의 것들이 (나)에서 협정한 내용을 사항별로 자세히 적는 것이 보통이었음에 비해, (H)-(나)는 그러한 방식을 피해 “遼國을 臣事하던 舊例에”따라서 라고 하였고, (I)-(나)도 “先朝의 制詔에 따를 것”이라고 하여, 큰 원칙만을 나타내었다. 금은 과거에 요가 서하에 요구하던 신례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식으로 서하에 대한 외교 원칙을 세운 것인데, 사실 금은 이러한 ‘遼의 舊例’를 고려에게도 적용하는 등 주변 국가를 상대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삼았다고 보인다.⁶²⁾ 다만 (I)-(나)에서 금이 인정한 ‘先朝의 制詔’의 ‘先朝’가 前朝인 遼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1년 전에 사망한 先帝 즉 太祖의 시대를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전자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制詔’라는 점에서 후자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태조 단계에서 금-서하 사이에 이미 ‘遼의 舊例’에 준하는 관계 회복의 협상이 있었음을 말한다. 아울러 (H)-(다)에 보이는 詛辭의 문체는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무렵에 교환된 바 있는 (E)와 (F)의 그것과 유사해 앞에서 지적한 詛辭의 형식화, 고정화 경

61) “太宗使王阿海, 楊天吉往賜誓詔曰, 維天會二年歲次甲辰, 閏三月戊寅朔, 皇帝賜誓詔於夏國王乾順, 先皇帝誕膺駿命, 肇啟鴻圖, 而卿國據夏臺, 境連遼右, 以効力於昏主, 致結讐於王師. 先皇帝以謂忠於所事, 務施恩而釋過. 迨眇躬之纂紹, 仰遺訓以遵行, 卿乃深念前非, 樂從內附, 飭使輶而奉貢, 効臣節以稱藩. 載錫寵光, 用彰復好, 所有割賜地土, 使聘禮節, 相為援助等事, 一切恭依先朝制詔. 其依應徵兵, 所請宜允. 三辰在上, 朕豈食言, 苟或變渝, 亦如卿誓. 遠垂戒諭, 毋替厥誠.”

62) 이러한 모습은 금이 고려를 상대하는 데에도 보인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자세한 例示는 생략한다.

향이 諸國 간에 진전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다.

IV. 결어

본고에서는 10-13세기 중국 宋代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安全保障策이라는 관점에서 제국 간에 교환된 ‘서서’를 대상으로 그 기원과 전통, 형식과 특성 및 의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원 면에서 송대 동아시아의 서서는 춘추시대 제후국 사이에서 유행한 맹서제도를 이은 것이다. 본래 맹과 맺는 서로 다른 것으로 東周 이전에는 단순한 구두 약속으로서의 맺가 더 일반적이었지만, 춘추 이후 상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會盟’이나 ‘盟誓’처럼 맹의 행위를 포함시킨 서약이 중시·유행하게 되었다. 맹은 신에 대해 약속을 어긴 자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춘추시대에는 그 엄숙함을 한층 드러내기 위해 敵血이 중요한 의식으로 연출되었고, 배신자에 대한 신의 저주를 예고하는 문구, 즉 詛辭가 盟誓文 말미에 상용구로 고정화되었다.

秦 이후 봉건 제후가 소멸하면서 맹서 제도가 함께 쇠락하였다. 하지만 그 관행이 한편에서 맹맥을 잇고 있었다. 그 수는 급감했지만 漢末에서 唐代에 걸쳐 일부의 사례가 산견되며,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맹서가 동일한 집단의 성원들 사이에서 공동의 적을 타도하거나 내부 결속을 다짐할 때 종종 행해졌다. 형식면에서 희생과 삼혈은 계승되었지만, 희생과 관련한 坎이 보이지 않는 대신 ‘壇’ 또는 ‘昇壇’이라는 용어가 거의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다. 특히 당에서는 이러한 형식에 입각한 맹약이 토번과의 사이에서도 맺어져 ‘당번회맹비’를 남기게 되었다. 중국 왕조로서의 당이 처음으로 ‘외국’으로서의 토번을 상대로 중국적 전통에 입각하여 회맹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맹약은 그 동안 중국 내부에서만 경쟁자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당대

에 이르러 외국으로 그 상대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에서 외국과의 회맹은 이것이 유일한 예이고, 외국이 오히려 맹약의 주된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송대부터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요, 금, 서하 등 왕조가 차례로 나타나 제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던 이들 사이에 안전을 보장하려는 맹약이 이용된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맹약은 춘추시대의 ‘맹’에서 반드시 동반되었던 희생과 삼혈이 사라지고 서로가 약속의 이행을 다짐하는 蜚書(誓表와 誓詔)를 교환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서서의 말미에는 춘추시대의 전통에 입각해 배신자에 대한 신의 저주를 적은 詛辭가 반드시 동원되었다. 하지만 송조에서 왕안석 등이 주도한 논의의 통해 볼 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현실적인 억지력이 없다는 인식이 한편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 동아시아에서 서서의 교환이 중요한 외교 관행으로 정착된 사실은 다음의 <표2>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고려의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했지만, 이를 포함해 생각할 때 송, 요, 서하, 금, 고려 5국 중 서서를 가장 많이 이용한 왕조는 일단 송,

	송	요	서하	금	고려
송	\	○	○	○	×
요	○	\	○	×	×
서하	○	○	\	○	×
고려	×	×	×	○	\
금	○	×	○	\	○

<표2> 10~13세기 동아시아 각국 간의 蜚書 교환의 실태 ('○'는 교환, '×'는 교환사실이 없음을 나타냄)

서하, 금이며 이들은 모두 각각 주변의 3개국과 서서를 교환한 것을 알 수 있다(<표2>).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볼 때 같은 3개국이라 해도 사실상은 금이 서서를 가장 많이,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금의 경우는 요가 이미 멸망 내지 멸망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로 취급해서 뺀다면 결국 동북아의 주요국 모두를 상대로 서서를 교환한 것이 된다. 즉 金만이 각국과 모두 蜚書를 교환한 것이며 그 밖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금만큼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송, 요, 서하 3국은 모두 서서를 서로 교환하고 있지만, 이들

은 모두 고려와는 그것을 교환하지 않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고려 측의 입장을 반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의 결과를 토대로 후고에서 다를 생각이다.

<參考文獻目錄>

- 노계현, 『高麗領土史』 (甲寅出版社, 1993)
- 박윤미, 「12세기 전반기의 국제정세와 고려-금 관계 정립」 (『史學研究』 104, 2011)
- 윤영인, 「거관과 여진」 (노기식 등 편, 『만주』, 소명출판, 2008)
- 김성규, 『宋代の西北問題と異民族政策』 (汲古書院, 2000)
- 김성규, 「미국 및 일본에서 ‘傳統中國의 世界秩序’에 관한 연구사와 그 특징 비교」 (『역사문화연구』 32)
- 김성규, 「3개의 ‘트라이앵글’: 북송시대 국제관계의 대세와 그 특징에 관한 시론」 (『역사학보』 205, 2010)
- 김성규, 「金朝의 ‘禮制霸權主義’에 대하여」 (『中國史研究』 86, 2013)
- 李力, 「東周盟書與春秋戰國法制的變化」 (『法學研究』 1995-4)
- 吳承學, 「先秦盟誓及其文化意蘊」 (『文學評論』 2001-1).
- 胡康林, 「先秦時期盟誓檔案概說」 (『雲南檔案檔案』 2012)
- 董芬芬, 「春秋會盟文化與盟書的文体結構」 (『西北師大學報』 45-2, 2008)
- 陳夢家, 「東周盟誓與出土載書」 (『考古』 1966-5)
- 李模, 「先秦盟誓的種類及儀程」 (『學習與探索』 2000-4, 총129기)
- 徐令杰, 「春秋會盟禮考」 (『求是學刊』 2004-2)
- 王亮, 「唐蕃會盟碑疏釋」 (『歷史研究』 1980-4)
- 祿金環·馬正云, 「吐蕃盟誓制度研究綜述」 (『絲綢之路』 2012-24)
- 張希清 등,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2007)
- 賈玉英, 「宋遼交聘制度論略」 (『中州學刊』 6, 2005)
- 尚世東, 「黨項盟誓制度探析」 (『寧夏大學學報』 23, 총94기, 2001)
- 古松崇志, 「契丹·宋間の澶淵體制における國境」 (『史林』 90-1, 2007)

(中文提要)

誓書: 10-13世紀東亞的安全保障策

金成奎

本文對10-13世紀東亞諸國之間互相交換的“誓書”進行了考察，並分析了誓書的起源、形式、特點及其意義。

本文考察“誓書”的起源中，發現了宋代東亞“誓書”繼承了春秋時代諸侯國之間流行的“盟誓制度”，並在文章里進行了分析和梳理。原來“盟”與“誓”是不同性質的，因“誓”是簡單的口頭約定而在東周以前“誓”比“盟”更為流行。但隨著春秋以後各國之間鬥爭的激烈，抱有“誓約”內涵的“會盟”、“盟誓”等更加收到了重視，也更流行了。一開始“盟”是指祈求上帝給違背約定的人天罰的行為。春秋以後為了更加表達其嚴肅性，出現了“歃血”的儀式並成為了重要的一部分。同樣也出現了上帝詛咒背叛人的文章：“詛辭”，固定寫在盟誓文的最後一段。

隨著秦後封建制度的消滅，盟誓制度也走向下坡，但其習慣尚未完全消失。雖然其數量大大減少，但漢末至唐代尚能看到一些痕跡。從這些零散的記錄上看，該時期的盟誓主要目的往往是同一集團的成員為了抵抗共同敵人或者為了鞏固內部團結。

到了宋代，依次出現遼、金、西夏等王朝，諸國之間競爭異常激烈，而且一方沒有實力溫泉壓倒另一方。在宋代這樣的情況下，各國之間為了保障安全充分利用了盟約。宋代東亞各國之間的盟約與春秋時期有所不同，首先春秋時期“盟”的過程中，一定要進行的“犧牲”和“歃血”，到了宋代不再進行，而被互相交換“誓書（包括”誓表“和”誓詔“）”所取代。但在誓書的最後一段仍然寫“詛辭”，以表示上帝對背叛人的詛咒。另一方面，王安石等

人主張“誓書”只是形式而不具有任何現實性控制力。儘管如此，在宋代東亞各國之間“誓書”的交換，成為了一個外交上的重要環節。通過對這時期各國誓書的研究發現了在宋、遼、西夏、金、高麗五國中，最多利用“誓書”的國家是金朝。

주제어 : 서서, 맹서, 저사, 송, 요, 금

關鍵詞 : 誓書, 盟誓, 詛辭, 宋, 遼, 金

Keywords: Covenants, Song, Liao, Jin, Goryeo

(원고접수: 2015년 10월 2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2015년 12월 14일,
수정원고 접수: 12월 20일, 게재 확정: 12월 25일)